

의안번호	2217719
의 퇴 인	남인순의원
회 답 일	2026.7.13.
추 계 번 호	26D1732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7억 1,740만원 등 향후 5년간 89억 9,500만원(연평균 17억 9,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보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6조 등)	1,717	1,757	1,797	1,840	1,882	8,995	1,799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보상심의위원회)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함 제정안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수용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거나 지원을 받아 아동, 장애인, 노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여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시설 나. 입양을 알선하거나 알선하였던 기관 2.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사건”이란 일제강점기 이후 집단수용시설등에서 벌어진 불법·부당한 감금, 수용, 폭력, 노역 등으로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및 집단수용시설등에 의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된 사건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 3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을 통보 받은 자를 말한다.	의무규정

2	안 제7조(사무국의 설치)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둠	의무규정
3	안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자립정착금, 그 밖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금원(이하 “보상금등”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9조(사실조사 등)	-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25조(추모·기념사업 및 공익기금조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기념관·추모공원 건립, 위령·추모행사 개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및 추모·연구 사업을 위하여 무연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미지급 보상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익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27조(피해회복지원센터)	-보건복지부에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지방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보상심의위원회)	○	
2	안 제7조(사무국의 설치)	○	
3	안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	○ 제정안은 보상금등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 후유증의 정도, 수용기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자립정착금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정안을 근거로 보상금등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4	안 제9조(사실조사 등)	○	
5	안 제25조(추모·기념사업 및 공익기금조성 등)	×	○ 제정안에 따라 추진될 기념관·추모공원 건립 사업, 추모행사, 기타 추모·기념사업 등의 내용을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

6	안 제27조(피해회복지원센터)	×	○ 제정안에 따른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의 업무는 현행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본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참고자료 별첨]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운영 현황 ○ 제정안 제27조 제3항에 따른 지방피해회복지원센터는 진실규명대상이 된 집단수용시설의 소재지인 서울·부산·경기·인천·대구·충남·전남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제정안은 권역별 설치규모, 재정 지원규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른 소요비용은 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과 사무국 운영, 사실조사 등 심의위원회 지원 경비로 구분하여 추계함
- 안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 수 11명 중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민간위원 수는 7명으로 가정하고, 위원회는 연간 4회 개최, 회당 30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함

－ 회당 지급 금액은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

- 안 제7조의 사무국, 안 제9조의 사실조사, 그 외 심의위원회 지원 관련 경비는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라 함) 업무수행 경비를 참고하여 추정하되,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은 제외함

[표 2] 제정안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상 위원회 비교

구분	제정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위원회 구성	11명 이내	15명 이내
위원장	국무총리	국무총리
지원조직	사무국	실무지원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사건 피해자 규모와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규모가 상이¹⁾할 수 있으나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사건의 경우 피해지역이 다양하여 조사지역 범위가 넓고, 진실규명결정 대상이 된 집단수용시설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 예산과 동일한 규모의 운영비를 가정하되, 제정안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외

[참고] 진실규명결정 대상 집단수용시설 현황

지역	관련 사건	진실규명 인원	운영기간	최대 수용인원	
					연도
서울	서울시립갱생원	7	1961~	1,957	1986
	서울시립아동보호소	20	1947~1975	2,328	1966
	서울희망소년원	2	1954~?	260	1960
	서울동부여자기술원	3	1961~1994	—	
부산	형제복지원	643	1960~1992	3,164	1986
	영화숙·재생원	181	1951~1976	600	1969
	덕성원	1	1952~2000	130	1971
경기	선감학원	230	1942~1982	407	1956
	성혜원	1	1978~	528	1986
	평택여자기술양성원	1	1974~1983	—	
	의정부부녀복지원	2	1981~1988	—	
	양주여자기술학원	2	1971~1993	—	
인천	협성여자기술양성원	2	1962~1992		
대구	대구시립희망원	4	1958~	1,400	1986
충남	천성원	2	1979~	(성지원) 600 (양지원) 582	1986
전남	동명원	4	1967~	180	1983
	계	1,105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2025.11.)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1)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사건 피해자 1,105명(진화위 종합보고서, 2025.11.), 여수·순천 10·19사건 10,000여명(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 실태조사보고서’)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심의위원회 운영(안 제6조, 제7조 및 제9조)

- 심의위원회 운영 경비는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심의위원회 지원 경비(사무국 운영비, 사실조사 경비 포함)로 구분하여 추계함
- (회의참석수당) 추계의 전제에 따라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7명에 대하여 연 4회 회의를 하고 회당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840만원 등 5년간 총 4,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4	8.4	8.4	8.4	8.4	4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심의위원회 지원)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 지원 경비는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의 예산을 준용함

-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은 48억 400만원이며, 제정안의 심의위원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연구용역 등의 사업예산을 제외한 금액은 16억 3,200만원임
 - 위 금액은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제외한 금액

[표 4]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 2025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내용	예산액	제정안의 심의위원회 지원 경비 포함 여부
위원회 및 지원단 운영 전문임기제 인건비	362	○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전문임기제 인건비	226	×
상용임금(기간제근로자)	124	○
회의참석 수당	132	×(별도 추계)
위원회 운영 경비(사무용품, 공공요금, 임차료, 여비 등)	1,146	○
손실보상금(의료지원금 등)	136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활동 지원	182	×
여순사건 관련 연구용역 추진	250	×
실무지원회 지원(지자체 보조)	2,246	×
계	4,804	1,6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위 내역 중 전문임기제 인건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기간제근로자 상용임금은 명목임금상승률을, 그 외 운영경비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²⁾
- 추계 결과, 심의위원회 지원 관련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7억 900만원 등 향후 5년간 89억 5,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심의위원회 지원 경비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전문임기제 인건비	362	386	397	409	422	434	2,048
상용임금(기간제)	124	132	137	141	146	151	707
위원회 운영 경비	1,146	1,191	1,215	1,239	1,264	1,289	6,198
합계	1,632	1,709	1,749	1,789	1,832	1,874	8,95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7억 1,740만원 등 향후 5년간 89억 9,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심의위원회 운영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4	8.4	8.4	8.4	8.4	42
심의위원회 지원	1,709	1,749	1,789	1,832	1,874	8,953
합계	1,717	1,757	1,797	1,840	1,882	8,99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6.3.)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3.5	3.0	3.0	3.0	3.0	3.0
명목임금상승률(%)	3.3	3.3	3.3	3.3	3.3	3.3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

[참고자료]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운영 현황

(자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연 혁

- (법률제정)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20.9., 양향자 의원) 및 제정('21.12.7.)
- (건립추진) 건립 부지 제안서 접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광주를 건립 위치로 결정('21.4.) 및 공사('22.1.~'24.4.)
- (기관출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광주, 제주) 등기('24.3.) 및 출범('24.7.)

□ 위치 및 시설현황

구분	위 치	주요시설
광주 (본원)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16번길 19(화정동)	상담실, 심리평가실, 몸풀이실, 프로그램실 등
제주 (광역거점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73 나라키움 제주마루	집단상담실, 신체치유실, 프로그램실 등

□ 주요사업

- 치유대상자의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심리적·신체적 증상의 치유·재활 및 사회적응 지원(심리평가 및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등)
- 국가폭력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에 관한 연구·개발
- 국가폭력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에 관한 교육·홍보
- 트라우마 치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현행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폭력"이란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서 민간인 집단희생, 사망·고문·상해·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테러·폭력·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2. "국가폭력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국가폭력
 - 나. 1945년 8월 15일 이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또는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사건
 3. "치유대상자"란 국가폭력등에 의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구금·부상·고문·가혹행위 또는 인

권침해 등 그 밖의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생존 피해자 나.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국가폭력등으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다. 국가폭력등을 조사·기록하거나 피해자를 지원·치유하는 중에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인력 현황

[인력] 정원 26명 / 현원 25명

(단위 : 명)

구 분		계	원장	센터장	연구직	상담직	재활직
광주 센터	정 원	13	1		3	7	2
	현 원	12	1		3	6	2
제주 센터	정 원	13		1		10	2
	현 원	13		1		10	2

※ 정원과 별도로 광주(4명), 제주(3명) 행정직 공무원 파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2025년	2026년	2025년	2026년
출연	국가	1,101	1,741	853	1,447
	지방자치단체	284	475	853	251
합계		1,385	2,216	1,706	1,698